

새솔동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새솔동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5. 29.(목) ~ 2025. 6. 11.(수) 18:00
2. 모집인원 : 19명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신청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
2.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비영리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위원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5., 2023. 8. 4.>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6. 위원의 임기 시작 1년 이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서류 4개 중 택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읍·면·동에 주소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
2.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비영리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신청서식은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새솔동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됩니다.

7. 접수방법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iamseacore@korea.kr)

가.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나. 이메일접수시간 : 2025. 6. 11.(수) 18:00까지 송부건

다. 접 수 처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189-6903)

8. 선정방법 : 공개추첨

※ 공개추첨은 현장 참석자에 한하며여(대리추첨 불가) 추첨합니다.

※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공개추첨 실시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10. 임무 및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민자치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

6. 17.>

1.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활동, 교육 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 등
- 기타 읍·면·동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등

라.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예비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 위원 결원 발생 시 예비순위 순서로 즉시 위촉.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음.

12. 문 의: 새솔동 주민자치회 ☎ 031-5189-6915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1-5189-6903

2025. 5. 29.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남, 여)	이 메 일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자료 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등 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주민자치 기본교육 이수여부	☐ 이수 ☐ 미이수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지원사유 (신청자 작성)			
활동내용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장 귀하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까지 주민자치위원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화성시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화성형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새솔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남, 여)	이 메 일	
주 소			
제출목적	2025년 화성시 새솔동주민자치위원 지원		
확인사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6. 위원의 임기 시작 1년 이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 선정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확인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원의 해촉)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올해 이월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